

『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30일

나. 발 의 자 : 권재욱, 김낙관, 김재상, 송용자, 신문식, 양진오
이지연, 장미경, 장세구 의원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9월 20일

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권 재 욱 의원

나. 제안이유

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,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과
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○ 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(안 제3조)

○ 재정지원 및 대상(안 제4조 ~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민법」 제32조,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8. 30. ~ 9. 6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대 운

○ 본 「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」 은

-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 등 임업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, 구미시 전체면적의 55%를 차지하며 잠재력이 있는 임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, 산림소득증대, 전문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